

제418회 국회
(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5일(수)

장 소 국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국회 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 대통령경호처 소관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 국회 소관
 - 대통령경호처 소관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4)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4)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2)
-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3)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03104)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5)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6)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9)
 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8)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3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1)
 3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2)
 3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3)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4)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1)
 3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5)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6)
 3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5)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4)
 39.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2676)
 40.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배순희 외 50,26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8)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4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4
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5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6
 가. 국회 소관
 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6.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6
 가. 국회 소관
 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6)	9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4)	9
9.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0)	9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4)	9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	9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9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	9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9)	9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2)	9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2)	9
17.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9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9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2)	9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3)	9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4)	9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5)	9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6)	9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9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9)	10
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8)	10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10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10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10
3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1)	10
3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2)	10
3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3)	10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4)	10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1)	10
3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5)	10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6)	10
3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5)	10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4)	10

39.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2676) … 10
40.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배순희 외 50,26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8) 10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찬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1.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3.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박찬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10월 31일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오후에는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1월 1일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방법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서는 제출 요구일 7일 전에 해당 기관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서류제출을 매번 의결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송달기한 문제 등을 고려하여 국정감사계획서에 명시된 위원회 공통요구서류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요구서류는 오늘 의결하기로 하고, 감사 실시일 7일 전까지 위원님들이 감사 대상기관에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관행대로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중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총 78명을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감사 일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관증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의결 이후 기관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일반증인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 간 추후 협의해서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에 대하여 감사 실시일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

(10시10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는 국정감사계획에 대해 감사 대상기관이나 감사 일정의 중복 등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등 10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 협의 요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협의 요청을 한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 결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67개를 포함한 총 308개 기관에 대해 협의를 요청한 상임위원회 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일정의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특별한 조정 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 이후에 상임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하고 추후에 협의 또는 재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가. 국회 소관****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라. 대통령경호처 소관****6.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가. 국회 소관****나. 대통령경호처 소관**

(10시12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 국회,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배준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배준영**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준영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사무처 19건, 국회도서관 4건, 국회예산정책처 3건, 국회입법조사처 6건 등 총 32건의 시정 요구사항과 사무처 소관에 대한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외국인의 청원권과 관련하여 외국 사례와 학계 논의 등의 연구·조사를 통해 국민동의청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방향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도서관 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의 이용실적과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므로 유사 데이터베이스와의 차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회답기간 준수율 감소 및 평균 회답소요일수 증가로 전년 대비 지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안 비용추계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가 정치행정 분야에 집중되는 반면 경제산업·사회문화 분야는 발간이 저조하므로 다양한 입법·정책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야별로 균형 있게 보고서 발간계획을 수립·관리토록 하였습니다.

2건의 부대의견으로서는 첫째 국회사무처는 승강기 근로자를 비롯한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 대기 공간을 마련할 때 업무와 휴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둘째 필리버스터 등 철야 운영 시 필수 종사자의 초파근무수당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5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전문상담위원의 예산집행 실적과 상담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전문상담위원 제도의 운영 전반을 점검·검토하여 전문상담위원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담금 이외에 아셈 회원국이나 다른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재원 조달 방안을 다각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6건의 시정요구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경비 예산편성 시 실제 소요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 및 세목 조정 등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타 부처의 중복연구 방지 및 연구용역 결과 활용 등을 위하여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보다 적극적으로 등록·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되 총 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부처와 사전에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비비 배정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예비비 신청 시 연내 집행 가능성은 고려하고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배준영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소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과 의사일정 제6항 국회,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시정요구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시정요구사항 등의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결에 대한 소속 기관장 등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기 사무총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김민기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국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깊이 유념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보여 주신 애정 어린 충고와 격려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비서실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2023회계연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경호처차장 김성훈**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향후에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입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장을 대신하여 제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3회계연도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세출 결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인권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기관에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성회 위원께서 신상발언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김성회 위원** 예, 오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안 나오셔서 좀 아쉽긴 한데요 신상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안창호 당시 후보를 보수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독교인인 안창호 위원장에게 매우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청문회를 보시던 기독교인들이 받으신 상처에 대해서도 사과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언어로 비판과 토론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하면서 이와 같은 자극적인 발언을 지양하고 내용과 사실로 국정을 감시하고 국민의 뜻을 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남깁니다.

마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법안 상정……

○**위원장 박찬대** 아직 법안 상정…… 올리면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하고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릴게요.

-
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86)
 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94)
 9.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민 의원·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0)
 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4)
 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0)
 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3)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8)
 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99)
 1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2)
 1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2)
 17.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1)
 1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5)
 1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2)
 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3)
 2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4)
 2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5)
 2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6)
 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8)

-
- 2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9)
 - 2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8)
 - 2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5)
 - 2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6)
 - 2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0)
 - 30.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1)
 - 31.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2)
 - 3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3)
 - 3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54)
 - 3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1)
 - 3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5)
 - 3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6)
 - 37.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5)
 - 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4)
 - 39. 국회의원의 하절기 옷차림에 관한 규칙안(박지혜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202676)
 - 40.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배순희 외 50,26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28)

(10시23분)

○**위원장 박찬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40항까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 1건의 규칙안 및 1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간사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배준영 위원** 배준영 간사입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법안들이 다수 상정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이런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법안들에 대한 상정을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은 절차부터 틀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습니다. 동 법안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제정법입니다. 제정안의 목적에도 ‘이 법은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가 공정하고 합헌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면서 검토보고서에 관계 부처로 법제처와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했는데 이러한 성격의 제정안은 운영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국회에서 재의요구 제한 의견서를 송부해야 된다는 제정안의 조항 때문에 국회사

무처 소관이라고 생각하여 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라면 제정안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거나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백번 양보해 운영위에 배정하였다면 응당 주무부처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검토보고서에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대통령실의 의견은 그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면서 재의요구 사유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률에 위임하는 규정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 소추 대상자의 사직·해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탄핵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국정 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 발생과 더불어 법안 심의, 예결산 심의 등 입법부인 국회의 업무 진행에 있어서도 심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제출된 법안들은 발의정족수 설정, 효력의 발생 시점 등에 대해서 명확히 검토되지 못한 채로 제출되어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입니다.

허위진술에 대한 경고·징계 요구와 임명권자에 대한 해임 건의를 규정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도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간 좀 더 주십시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동 법에 따른 죄의 형태를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 3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중 위증만 취사선택하여 고발 없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편파적입니다.

또한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는 헌법 규정으로 현행 국회법에도 해임건의안에 대한 절차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진술 여부 및 경증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면 다수당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게 되어 정쟁 요소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처럼 형식과 원칙에도 맞지 않고 위헌적이고 편파적인 요소가 가득한 제정안과 개정안들을 여야 협의 없이 일방 상정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특히 제정법의 소관 상임위 배정부터 여야 간 재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에 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퇴장하시지요.

(일부 위원 퇴장)

○**박성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제 의사진행발언 듣고 가세요.

배 위원님, 제 의사진행발언 듣고 가야지요.

○**위원장 박찬대** 상정은 했고,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박성준 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듣고 가셔야지.

○**전용기 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나가면 어떡합니까? 앞뒤가 같아야지요.

○**서미화 위원** 듣고 가시지요.

○**박성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예.

○박성준 위원 국힘당의 배준영 수석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국회운영위가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한 관례들이 있습니다. 그 관례를 따랐고요.

또 하나는 그 관례에 협의를 통해서…… 배준영 수석과 국회운영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사 간에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고려해서 일괄 상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국회의 전통, 관례상 숙려기간이 지나면 법안에 대해서는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국회운영위가 구성됐을 때 여당인 배준영 수석과 함께 합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관례대로 따르자 해서 법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일괄 상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국회운영위가 열렸을 때 여당 간사가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해 줬고 ‘다음번에는 상정합시다’ 이렇게 또 합의가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운영위가 열려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법안, 지난번에 올리지 못했던 법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이 국회 관례이고 또 배준영 수석과 저희가 여야 간의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통해서 이뤘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법안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 이 상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법안을 얘기하는데 보통 일괄 상정된 법안은 소위로 넘어갑니다. 운영개선 소위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당인 배준영 수석 또 여당의 위원들과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이 법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개선소위에서 일괄 상정한 법안들을 논의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법안 관련된,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한 행사에 관한 법률안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대통령과 관련된 재의요구권,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했습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서의 중언·감정과 관련된 법률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 많은 중인들이 오는 데 위증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불출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 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올라온 건데, 이것을 일괄 상정하고 소위에서 충분한 논의의 장이 마련돼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얘기하면 되는 건데 이 법안 상정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고 그동안의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례상도 맞지 않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가 여당 간사와 함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해 왔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건데 일방적으로 자기주장 하고 듣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귀와 입을 닫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를 닫겠다는 태도에 있어서는 저는 여당의 책임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했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 국회운영위원회의 관례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윤종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군 위원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었으면 하는 내용인데 다들 안 계셔 가지고 아쉽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관한 감사원 결과를 다들 보셨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 전체가 불법, 탈법을 넘어서 무법임을 감사보고서가 보여 주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엄청난 불법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면죄부 발부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원 관련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가 따로 다룬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관련 불법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만큼 국정감사 일정과 상관없이 조속히 여야 간사 협의 아래 국정조사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불법행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기관이 계약서 없이 용역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은 무효입니다.

둘째로 제대로 된 입회나 감리도 없이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야 대통령비서실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치더라도 대통령비서실에서 누가 무슨 근거로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를 지시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면허 없이 관급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면허 없이 관급 공사를 따내고 진행한 건설업자를 구속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실이 가득한데 대통령비서실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넘어가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기관의 모든 행위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촉박했다는 대통령비서실의 변명은 변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예산이 부족했으면 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유가 없는데 수많은 법률을 위반하며 이전을 강행한 배경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날마다 불거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 등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현정 유린이자 국정농단 행위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부인, 대통령 친인척의 불법행위 등을 대통령비서실의 소관 사항이고 대통령비서실의 소관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사항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렇게 명명백한데도 우리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부인의 선거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위원회가 집무실, 관저 불법 공사와 김건희 여사 총선 개입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지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대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지금 윤종군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참고해서 집무실, 관저 불법 증축 및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국정조사의 건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대 법안 등은 아까 일괄해서 상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관례에 따라 단말기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체토론을 생략하되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향후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9항까지 33건의 법률안 등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40항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 위원(23인)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유정 권영진 김성희 김정재 노종면 모경종 박성준
박찬대 배준영 서미화 신장식 양문석 윤건영 윤종군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천하람 추경호 추미애

○청가 위원(2인)

고민정 김민석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입법심의관 주성훈

○국회측 참석자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입법차장 진선희

사무차장 박태형

국회도서관

관장 이명우

국회 예산정책처

처장직무대리 김경호

국회입법조사처

처장 박상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박춘섭

총무비서관 윤재순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왕윤종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기획관리실장 안경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남규선

기획조정관 조영호

【보고사항】**○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부승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2024. 9. 19.

○의안 회부**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8)

이상 3건 9월 11일 회부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5)

9월 12일 회부됨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

(2024. 9. 12. 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2.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71)

이상 4건 9월 13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3)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2024. 9. 13. 박성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4016)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4. 9. 13. 황운하 의원 등 18인 발의)(의안번호 2204021)

이상 3건 9월 19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5)

이상 2건 9월 20일 회부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20.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28)

이상 2건 9월 23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0. 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3)

9월 1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요청서 회부**국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동의 요청**

(2024. 9. 13. 의장 제의)

9월 13일 회부됨